

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0.31]
(일부개정) 2022.10.31 조례 제184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안전총괄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15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병역명문가"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
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"병역명문가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"시장" 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홍보 및 예우)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2.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·격려
3.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
4.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항 신설 2022.10.31>

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31>

제6조(우대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

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0.31>

1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2. 체육시설 사용료
3.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
4.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시에서 설치, 관리,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10.31. 조례 제1848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사. 「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4의2. 「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